

소 장

원 고 음 영 천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장

소송물가액 금10,000,100원
인 지 대 금50,000원
송 달 료 금45,200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귀중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137-070)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변호사 河昇秀 李相勳

TEL : (02)587-9400
FAX : (02)587-9373

소 장

원 고 음 영 천

서울 강북구 미아8동 324의 73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10 서정빌딩 4층

(전화번호 : 587-9400, 팩스 : 587-9373)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137-070)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 1 -
변호사 河昇秀 李相勳

TEL : (02) 587-9400
FAX : (02) 587-9373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강제1호증(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1) "87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피고청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과 (2) "피고청에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근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3) "피고청의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999. 4. 24.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강제2호증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는 위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 관리되고 있으므로 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동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동 제4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의의

(1) 과거 원고는 6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 6. 12. 서울 을지로에서 시위 도중 체포되어 구속된 후, 같은 달 29.경 6. 29. 선언과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3학년에 휴학 중에 있었고, 그 후 원고는 특별히 학생 운동을 하지 않은 채 무난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때까지도 수시로 경찰로부터 "지금 뭐하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누구를 만나느냐" 등의 사생활 정보를 묻는 전화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찰로부터의 감시와 동태 파악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자정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원고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1999. 6.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지방법원 99가소31031호).

(2) 위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경찰로부터의 불법적인 동태파악이 피고청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그 근거가 되는 피고청 보관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과 "그 동안 피고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기타 원고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피고청의 동태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1) 법제1항 제1호의 해당 여부

(가) 우선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이 보안업무 규정의 어떤 조항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피고청이 수집한 타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동향 파악을 당한 근거가 되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뿐입니다. 원고는 87년 6월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청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 2달에 1번씩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감시를 당하였는바, 그동안 어떠한 지침에 따라 자신의 어느 부분까지 감시를 당하였는지를 알고자 이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은 사법 및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원고가 자신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는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청으로
는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
위에 관한 한 최소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투명하게 국민들
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 원고가 청구한 “그 동안 피고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보호되는 정보라 할 것
입니다. 더구나 피고청이 그동안 원고에 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들은 서울지방
법원 99가소31010호 판결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원
고는 피고청이 관리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가 청구한 “피고청의 동태 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와 관련된
정보”은 국민의 알 권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을 통하
여 그동안 말로만 듣던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그 피해자이었던 원고로서는 당
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피고가 제시한 법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으로 어
떠한 법률, 명령의 조항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법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이 과연 법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심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정보」나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나 「통계적인 숫자」에 관한 정보 뿐인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게 되는지 원고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 법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또한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어떻게 피고청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각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갑제2호증 정보비공개 결정서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소장부분 1통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 1. 위임장 1통

1999. 7.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하 승 수

서울행정법원 귀중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137-070)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변호사 - 7 - 河昇秀 李相勳

TEL : (02)587-9400
FAX : (02)587-9373

별지목록.

1. 87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피고청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2. 피고청에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근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3. 피고청의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